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 규정 신설〉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2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안 제77조 등)	2
※ 참고자료	9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9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1]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1.

다.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안 제77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그 기본액, 지연 일수당 가산액 및 총액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7조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5. (생략)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u>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u>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6의5. (현행과 같음) <u><삭제></u>

아니한 자

6의7. ~ 1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6의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과태료)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

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기

본액, 지연 일수당 가산액 및

총액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¹⁾
-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6조는 과태료에 관해 규정하는바, 동조 제1항제6호의6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행령 74조의 [별표9]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²⁾하고 있음.
- 그러나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

1)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서.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	750	1,500	3,000

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음.

- 시행령에서도 지연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뿐, 신고의 지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임³⁾.

○ 개정안은 기본 과태료에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기업에 신속히 침해사고 신고를 할 유인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는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산점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의 ‘즉시’라는 의미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때’로 볼 수 있으며⁴⁾⁵⁾,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에서도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⁶⁾’ 신고할 것을 규정함.

3)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지연한”으로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4896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현재 본회의 계류 중임.

4) KISA, 침해사고 신고 안내서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27&nttId=27050&menuNo=205021>

5)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4896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현재 본회의 계류 중임.

6)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

- 즉 현행법 체계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그런데 개정안 제77조에 따르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이 가산되므로, 침해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만약 위의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라면, 과태료 가산의 기산점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과태료 총액 한도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요건·기준·절차,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⁷⁾

응답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7) 법률안검토 표준교재, 2024.8, p260~p261

- 특히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는 ① 과태료 부과에 근거 규정을 두고,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③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④ 과태료 금액, 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해야 함.⁸⁾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이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설되는 제77조는 과태료의 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침익적인 행정 처분으로, 개정안은 과태료의 상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과태료의 총액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시행령에서 과태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때도, 법률에서 주어진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례도 있음.⁹⁾
- 셋째, 계단식·불연속적 과태료 산정이 아닌, 개정안과 같은 연속적인 과태료 산정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8)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p806

9) 「**궤도운송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때에도 그 총액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입법례를 볼 때,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산하는 경우,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 액수를 계단식으로 상향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¹⁰⁾, 이번 개정안은 ‘지연 일수당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연속적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입법례와 차이가 있음.
- 기존의 입법례나 기존의 가산적인 과태료 제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불연속적·계단식 상향 구조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미신고에 더해 지연신고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214896호)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계류 중이므로, 해당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이후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1]. 참고자료에 첨부.

※ 참고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항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 지연신고 또는 통보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6조제2항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3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1]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문 의 처

02)6788-5228